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90의4호서식]

제 호
수 신 :
제 목 :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

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행위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직 업	
	주 소	
	변 호 인	
피해자 동거인 가족	성 명	
	주 소	
	직장(소재지)	
현재 잠정조치의 내용	사 건 번 호	
	결 정 일 자	년 월 일
	잠정조치의 종류	
	잠정조치의 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
잠정조치 종류의 변경 내용	[□]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[□] 피해자,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[□] 피해자,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[□]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[□] 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	
범죄사실 및 잠정조치 종류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		
비 고		

사법경찰관